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15-130				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급	행정7급	성명	이수현
입안주무부서	교통행정과		통보(조치)일	2015. 11. 18.	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		
세부평가서 참조	<u>개선권고</u>		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결과에 대하여 방침 수립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		

세부 평가서

- **자치법규명** :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가대상 조문

제10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“어린이집의 원장” 등에게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·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**평가기준** : 집행기준의 적정성

- **현 황**

-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함

- **문 제 점**

- “보육시설의 장”을 “어린이집의 원장”으로 개정하면서, 구문상 “초등학교의 장”이 “초등학교”로 해석되는 오류 발생
-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위치하는 유치원을 조문에 포함시킬 필요성

- **검토결과** : **개선권고**

개정안	개선권고안
제10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“어린이집의 원장” 등에게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·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제10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관내 <u>초등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</u> 등에게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·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